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03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 장철민·이기헌·임미애

김교흥 • 한창민 • 박홍배

박정현 • 이춘석 • 김한규

박지원 · 강선우 · 이수진

조승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그 심의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및 15조제1항).

법률 제 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4항제2호 중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을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출원인"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
위원회) ① ~ ③ (생 략)	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
	<u> </u>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4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	2.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
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	
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u>위</u>
<u>출원인</u> 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	
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